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6. 9. . 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8월28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9월 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: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행정위원회(2006.9.8)

상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 진)

가. 개정이유

○ 2005. 1.27일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면 개정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을 확정·허가하기 전에 방재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기 위하여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"를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
- 기능별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 사안별로 전문가를 지정하여 그 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위원회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여금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였으며
- 회의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검토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회의 및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지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
다. 참고사항

○ 근거 : 「자연대책법」제4조 및 「자연대책법 시행령」 제5조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완섭)

- 본 조례중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
- 안 제4조 제1항 "위원장을 소관국장으로 하고"를 "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"로
- 안 제5조 후단 "간사는 소관과장이 된다"를 "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"로 하고
- 안 제6조 "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"는 위원장과 의장이 서로 다른 권한은 없으므로 삭제하고
- 본 조례는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이 본 조례를 알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부칙 규정의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"를 "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1) 본 조례중 지역주민이 소관부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.
- 2)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인지 후 시행되도록 하였음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1) 제4조제1항 중 "소관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고
- 2) 제5조중 "소관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하고
- 3) 제6조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"를 삭제하고
- 4) 부칙의 "공포한"을 "공포 후 1월이 경과한"으로 수정

5. 審査結果: 修正案 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의 안 관 련 번 호 2 호

제 안년월일 : 2006. 9. 8. 제 안 자 :김기중위원외1인

1. 수정 이유

○ 제4조(위원장) 제1항중 "소관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고, 제5조(간사) 중 "소관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 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관부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제6조(회의) 제1항중 의미가 중복된 "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"를 삭제하여야 하며, 부칙의 "공포한"을 "공포 후 1월이 경과한"으로 수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인지케 한 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골자

○ 제4조(위원장) 제1항중 "소관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고, 제5조(간사)중 "소관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하고, 제6조(회의) 제1항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"를 삭제하고. 부칙의 "공포한"을 "공포 후 1월이 경과한"으로 수정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- (안) 제4조(위원장) 제1항중 "소관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고,
- (안) 제5조(간사) 중 "소관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하고.
- (안) 제6조(회의) 제1항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"를 삭제하고,

부칙의 "공포한"을 "공포후 1월이 경과한"으로 수정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제 정 안	수 정 안
	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<u>소관국장</u> 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 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소관과장</u> 이 된다 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<u>제2조의 규정에</u>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,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 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(개정안과 같음) 제5조(간사)
	부칙 이 조례는 <u>공포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<u>공포후 1월이 경과한</u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 번호 2

제출일자 : 2006. 8. 2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○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 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·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으로부터 발생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기 위하여 "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"를 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·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구성 : 제9조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
 - 구 성(안 제2조 및 안 제4조)
 -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.
 - ·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된다.
 - · 위원은 본부장이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기 능(안 제3조)
 - •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 - ·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 - ·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및 중앙본부장이 고시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.

- 회 의(안 제6조)
 - ·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한다.

3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(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: 필요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06. 5.23. ~ 2006. 6.12.)결과 : 의견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②위원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위촉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- 2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- 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- 4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

제4조 (위원장) ①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관과장이 된다.

- 제6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,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검토의견 제출) ①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 도록 할 수 있다.
 - ②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8조(현지조사)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·사업시행자·사업승인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회의록)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회의일시 및 장소
 - 2. 출석위원 성명
 - 3. 검토사항
 - 4. 토의진행사항
 - 5. 위원발언 내용
 - 6. 대상사업 협의겸토 결과
 - 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○ 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	검토의겨서
-------------------	-------

1. 총괄의 경

2. 세부(분야별)검토의견

3. 기타 의견

상기와 같이 ○○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.

. . .

검토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